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

[평택·당진항 1종 항만배후단지 공공 화물차 주차장  
조성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2026. 4.



평택지방해양수산청

# 목 차

**I. 일반사항**

**II. 항목별 세부평가기준**

**III.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른 배점표**

**IV.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작성방법 및 서식**

# I. 일 반 사 항

1. 이 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제1호 [별표 2]에 따라 해양수산부가 정한 「기본계획·기본설계·실시설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에 따릅니다.
2. 참여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 용역수행실적·신용도·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업무중복도·해외 설계수행실적·전차용역 수행실적·참여기술인 해외용역 참여실적 등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위탁업무수행기관 등 지정」에 따른 위탁 업무수행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 용역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3. 우리 청은 이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기간의 계산은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점수 계산은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반영합니다.
4. 평가방법은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점수가 합리적 통계 등에 의하여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평가의 변별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대평가에 의합니다.
5. 상대평가지 등급별 배분은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로 하고, 점수는 수(100%), 우(90%), 미(80%), 양(70%), 가(60%)로 배분합니다.
6. 평가대상 사업에 대한 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반드시 해당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고, 해당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써 그 건설기술인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우리 청의 차기 용역 평가 시 이에 따른 감점을 할 수 있습니다.
7.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유사 용역 수행실적·재정상태 건설도·기술개발 및 투자실적·해외설계 수행실적·전차용역 수행실적에 용역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단,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 시 사업수행능력 평가 대상자에 해당되는 공동도급자의 참여기술인(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지분율대로 참여하여야 하며, 지분율에 의해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조정할 수 있습니다.
8.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용역사업자의 경우, 하도급을 받은 만큼 그 실적을 인정합니다. 이 경우, 실적 건수의 산정은 해당 용역사업의 총용역비에 대한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만큼 인정합니다.

9. 해외설계용역수행실적은 용역계약서류 또는 해당국 발주청의 확인서 등 사실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해외건설협회가 확인한 후 발급한 실적에 한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평가합니다.
  - 가) 해외설계용역실적의 인정범위는 건설공사에 대한 설계용역, 건설사업관리 용역이 포함된 설계용역에 대하여 해당 설계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설계 등의 용역에 해당하는 실적에 대하여 인정합니다. 단, 해외 현지법인 또는 지사의 명의로 직접 계약하여 수행한 실적은 출자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합니다.
  - 나) 해외설계용역비는 해당 국가의 발주기관과 준공금액을 준공일 기준으로 한국 화폐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합니다.
10. 참여기술인의 해외용역 참여 실적은 용역계약서류 또는 해당국 발주청의 확인서 등 사실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한국건설기술인협회가 확인한 후 발급한 실적에 한하여 평가합니다. 이 경우 해외설계용역 참여 실적(해외 현지법인 또는 지사의 명의로 직접 계약하여 수행한 용역에 참여한 실적 포함)의 인정범위는 건설공사의 설계용역에 대하여 당해 설계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설계 등의 용역에 참여한 실적에 대하여 인정합니다.
11. 가점과 감점을 합산한 점수를 총점으로 하고, 총점이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합니다.
12. 평가결과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해당 용역사업자에게 개별 통보(총점) 하며,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 청에서 별도로 지정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평가결과 개별 통보 시 안내
13.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평가자료를 공문과 함께 제출하고, 평가자료 작성 시 우리 청 기준 등을 정확히 숙지하여 평가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평가는 제출된 자료에 한하여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14.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선정된 입찰참가 대상자와 관련하여 평가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상이한 부분이 발견되어 해당 업체를 대상자에서 제외하는 경우, 잔여 업체만을 입찰 참가 대상자로 선정합니다.

15. 「국가계약법」 제42조,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가 90점 이상인 자를 입찰참가대상자로 선정하되, 90점 이상인 업체 수가 2개사 미만일 경우에는 재공고 합니다.
16. 평가자료 제출 시, 참여업체는 스스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자기평가서 (평가점수 산출근거 첨부)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7. 건설사업관리 용역 실적을 설계 실적으로 인정하는 경우, 동일한 사업에서 3년 이상 상주하여 근무한 건설사업관리 용역 실적은 설계 실적 2건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비상주 또는 기술지원 기술인으로 근무한 건설사업관리 실적의 경우 설계 실적 0.2건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18. 업무중복도 평가 대상인 주공종 분야는 3개분야(항만·해안, 토질·지질, 구조분야)로 합니다.
19. 업무중복도 평가에서 '실무기술인'은 용역에 참여하는 기술인 중 등급, 실적, 경력을 평가받지 않는 기술인을 의미하며, 업무중복도(양식13) 서류 작성 시 용역에 참여하는 모든 기술인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20.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의 업무중복도는 2019년 4월 1일 이후 계약을 체결한 용역에 대해서만 산정합니다.
21. 참여기술인(실무기술인을 포함)의 업무중복도는 입찰공고일 기준 건설 엔지니어링관리시스템(CEMS)에 등재되어 있는 자료로만 평가합니다.
22. 설계 등 용역사업자는 업무중복도 평가대상 실무기술인이 사업수행능력평가 이후 계약 시까지 사망·질병·퇴직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용역에의 참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평가점수가 유지될 수 있는 실무기술인으로 교체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교체를 이유로 당초 업무중복도 평가점수는 변동되지 아니합니다.
23. 제출되는 모든 평가서류의 증빙자료는 사본을 첨부할 수 있으며, 사본서류에 대한 원본대조필 날인을 대신하여 평가서에 확약서(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약한다.)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다만, 낙찰자에 대해서는 계약 전 원본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할 수 있으며, 확인과정에서 평가점수에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낙찰 등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Ⅱ. 항목별 세부평가기준

## 1. 참여기술인 평가

가. 참여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참여회사에 재직 중인 자로서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등록된 자에 한합니다.

나. 공고일 현재 참여기술인의 최근 설계용역업체간 이적기간에 따라 평가점수(등급, 경력, 실적)에 감소계수를 곱하여 최종 평가점수를 산출합니다. 단, 회사의 부도, 파산, 해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이적과 이적 전 회사에서 5년 이상 장기 근속한 경우는 이적계수의 적용을 제외합니다.

※ 직전 소속회사에서 확인하는 재직기간을 증빙할 수 있는 퇴직증명서 등을 첨부할 것.

- 최근 이적기간 3개월 미만 : 0.95
- 최근 이적기간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0.98
- 최근 이적기간 6개월 이상 : 1.0

다. 우리청은 분야별 책임 및 참여기술인의 등급, 경력, 실적점수 산정 시 가중치를 적용하여 차등 평가합니다.

라. 공고일 현재 참여사에 재직 중인 자로서 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참여기술인을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우리청은 다음 기술인 7명에 대하여 평가를 시행합니다.(단, 업무중복도 평가 시 실무기술인에 대한 평가가 추가됩니다.)

구 분	분 야	인원	가중치
책임기술인	항만 및 해안	1인	100
분야별 책임기술인	항만 및 해안	1인	40
	토질·지질	1인	30
	구조	1인	30
분야별 참여기술인	항만 및 해안	1인	40
	토질·지질	1인	30
	구조	1인	30

마. 참여기술인의 경력, 실적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의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사업분야의 설계,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유지관리 또는 감독·감리수행 등의 경력기간과 수행 실적을 용역의 종류, 규모, 금액, 건수, 수행업무 및 전체 계약기간 중 실제 참여기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합니다.

바. 참여기술인이 발주청·감독기관 또는 건설관련 업체의 임·직원으로서 해당 분야의 설계업무를 감독 또는 관리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 분야의 경력 및 실적으로 인정합니다. 단, 발주청·감독기관의 경력과 실적은 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 중 최대 1인에 한하여 인정하며, (공동계약의 경우 참여한 업체별로 1인까지 인정합니다.) 분야별 참여기술인의 경력과 실적으로는 제한 없이 인정 가능합니다.

사. 「건설기술 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관련업체의 임·직원이 아닌 자 중 건설기술인 경력관리수탁기관에 신고한 특급기술인으로서 설계의 경제성을 검토하는 가치공학적 설계검토기술·견적전문기술·시방서전문기술·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특정분야 기술인(이하 “계약직전문기술인”이라 한다)를 해당 용역의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참여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업체소속의 기술인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직 전문기술인은 해당 업체소속의 기술인과 동일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며 해당업체는 이를 확인하는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참여기술인의 등급 평가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제2023-133호)」에 의거 산정된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한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상의 역량지수별 등급에 따라 차등 평가합니다. 다만, 개정규정에 따라 등급을 산정한 결과 종전 규정에 따른 등급보다 떨어지는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부칙 제9조(건설기술인 등급에 대한 경과조치)에 따릅니다.

자. 참여기술인의 경력평가

1) 사업책임기술인, 항만·해안분야 책임·참여기술인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항만·해안분야 사업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항만 민간투자사업, 「항만법」에 의한 비관리청항만개발사업, 「어촌·어항법」에 의한 어항건설사업 포함, 이하 같음)의 설계(타당성조사, 기본계획조사, 기본설계, 실시설계), 건설사업관리(시공단계, 감독권한대행 또는 안전관리)[상주, 기술지원 포함] 경력 및 발주청·감독기관 또는 건설관련 업체의 임·직원으로서 설계, 용역감독 또는 관리자 경력 중 전문분야가 항만 및 해안분야 경력 : 100%

※ 건설사업관리 용역의 경우, 경력 만점 기준의 50%에 해당하는 경력만 인정

나) 기타 분야사업 용역중 항만 및 해안분야 사업 설계경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항만·해안분야 공사 감독 및 관리자 경력 중 전문분야가 항만 및 해안분야 경력 : 80%

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의 항만·해안분야 계획경력, 항만·해안사업 시공경력, 건설관련업체 관리자경력, 학교·교육기관의 항만·해안분야의 강의 경력 : 60%

2) 토목구조, 토질·지질 분야별 책임·참여기술인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항만·해안분야 사업 설계(연구용역 포함) 경력 중 해당 전문분야 경력 : 100%

나) 기타 토목분야 사업 설계(연구용역 포함)경력 중 해당 전문분야 경력 : 80%

다) 항만·해안분야 사업 설계(연구용역 포함) 경력 중 해당 전문분야 이외의 분야, 항만·해안분야 사업 설계용역 및 공사 감독관련 업무, 항만·해안분야 사업 건설사업관리(시공단계, 감독권한대행 또는 안전관리)[상주, 기술지원 포함]경력, 항만·해안분야 사업 시공경력, 건설관련업체 관리자 경력, 학교·교육기관의 해당 전문분야 강의 경력 : 60%

※ 건설사업관리 용역의 경우, 경력 만점 기준의 50%에 해당하는 경력만 인정

#### 차. 참여기술인의 경력평가 시 근무경력의 인정범위

- 1) 참여기술인의 경력인정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라 발주청에서 시행한 설계 등의 용역에 참여한 경우로써 해당 경력은 발주청, 참여분야 등에 따라 차등 평가합니다.
- 2) 발주청 근무경력중 개인 경력확인서에 감독관련업무(계획, 지도감독 포함)를 수행한 용역명 또는 공사명이 명확히 기재된 경력에 한하며, 경력증명서 상에 발주청, 사업명 등이 불분명 또는 미기재되어 있는 경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3) 발주청 및 건설관련업체 관리자 경력 인정은 경력확인서에 관리 업무를 수행한 항만·해안분야 건설공사 등의 사업명이 명확히 기재된 경력에 한하며, 경력증명서상에 발주청, 사업명 등이 불분명 또는 미기재되어 있는 경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카. 실적

- 1) 참여기술인의 실적 인정 대상사업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항만·해안분야 용역사업(비관리청항만개발사업, 민간투자사업, 어항건설사업 포함) 중 해당 분야에 참여하여 최근 10년내(공고일 기준)에 전체 준공(장기계속의 차수준공은 제외)한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용역 사업(도시계획분야의 경우 종합계획 포함, 예비타당성 조사용역은 제외)에 한하여 용역비가 3억원 이상인 사업에 대하여 평가합니다.
- 2) 상기 대상용역 중 참여기간이 6개월 이상인 용역에 한하여 평가합니다.
- 3) 일괄입찰(기본 및 실시설계) 및 대안입찰(대안설계), 기본설계 기술제안 입찰(실시설계)공사,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용역의 종류, 규모, 금액, 건수, 수행업무와 참여기간 비율을 적용하되, 낙찰되거나 설계보상자로 결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단, 사업책임 기술인과 분야별책임기술인에 한하며, 해당사업 해당 발주청의 확인을 득한 것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타. 교육훈련

참여기술인이 최근 3년간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정도에 따라 평가합니다.

파. 전차용역 수행실적(금회용역 해당사항 없음)

2. 유사용역 수행실적

가. 유사용역수행실적이란 최근 5년간 해당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의 용역사업 중 준공된 실적을 말합니다.

- 1) 참여업체의 유사용역사업 인정 대상사업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용역사업으로서 전체 준공(장기계속의 차수준공은 제외) 용역금액이 「국가계약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용역사업(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에 한하여 인정하며, 용역의 종류, 규모, 특성 등에 따라 준공용역금액은 조정이 가능합니다. (단, 예비타당성 조사용역은 제외합니다.)
-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아닌 일반기업체에서 발주한 용역의 수행실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유사용역실적 건설공사에 설계·시공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방식으로 참여하여 낙찰자로 결정된 사업의 설계를 수행한 실적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 「항만법」에 의한 비관리청항만개발사업에 의한 사업의 설계를 수행한 실적은 해당분야의 유사용역실적(건수 및 금액)으로 인정하되, 설계·시공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의 설계보상 대상자의 유사용역실적은 낙찰자의 80%로 합니다.

가) 실적금액은 낙찰금액에 엔지니어링사업대가 기준 중 건설부문 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범위 내에서 인정하며, 아래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설계·시공 일괄입찰공사 또는 대안입찰공사의 설계를 수행한 실적은 낙찰자로 결정된 증빙서류와 공사금액을 알 수 있는 계약서 등 (설계보상대상자의 경우에도 해당 발주청의 증빙 서류 등 제출)

※ 민간투자사업의 설계를 수행한 실적은 사업시행자 지정공문 사본,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승인 근거서류, 공사금액을 알 수 있는 서류, 사업시행자와 설계  
 용역사간에 체결한 계약서류 사본, 사업시행자가 확인한 설계완료 증빙자료 등

3) 해외실적의 경우 외국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설계용역 및  
 설계·시공일괄입찰(Design-Build방식 포함)을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유사용역 실적(건수 및 금액)으로 인정합니다. 단, 금액은  
 준공일 기준으로 한국화폐 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합니다.

※ 해외실적의 경우 외국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용역은 용역 계약서류 또는  
 해당국 발주청의 확인서 등 사실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해외건설협회가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관련자료 미제출시 평가제외)

4) 유사용역 실적은 총 사업건수 및 금액으로 각각 평가합니다.

가) 유사용역 실적은 총 사업건수 및 금액으로 각각 평가하되 공동  
 도급으로 수행한 실적은 용역참여 지분비율대로 반영합니다.

나) 본 과업에 공동도급으로 참여한 경우, 각 참여회사의 실적에  
 용역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다) 용역의 종류, 규모, 특성 등에 따라 건수 및 금액 규모를 별도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시 1) 해외항만개발 협력사업의 유사용역 평가

실적건수	4건 이상	4건 미만 3건 이상	3건 미만 2건 이상	2건 미만 1건 이상	1건 미만
	7.0	6.3	5.6	4.9	4.2
실적금액	30억 이상	30억 미만 20억 이상	20억 미만 10억 이상	10억 미만 5억 이상	5억 미만
	7.5	6.8	6.0	5.3	4.5

예시 2) 연안정비사업의 유사용역 평가

항만분야 (70%)	5건 이상	5건 미만 4건 이상	4건 미만 3건 이상	3건 미만 2건 이상	2건 미만
연안분야 (30%)	3건 이상	3건 미만 2건 이상	2건 미만 1건 이상	1건 미만	-
배점	7.0	6.3	5.6	4.9	
항만분야 (70%)	60억 이상	60억 미만 50억 이상	50억 미만 40억 이상	40억 미만 30억 이상	30억 미만
연안분야 (30%)	10억 이상	10억 미만 7억 이상	7억 미만 4억 이상	4억 미만 1억 이상	1억 미만
배점	7.5	6.8	6.0	5.3	4.5

나. 업체의 전차용역 수행실적(금회용역 해당사항 없음)

다. 용역수행성과

- 1) 「건설기술 진흥법」 제50조에 따라 참여업체가 최근 3년 내(공고일 기준) 해양수산부 산하 11개 지방해양수산청에서 수행한 해당분야 설계용역 (장기계속용역의 차수분 제외) 평가결과의 평균점수에 따라 평가한다.
- 2)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용역평가결과 평균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단,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용역평가 실적이 없는 업체는 용역수행성과 배점기준의 중간점수(87.5점)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예시) A업체(평균점수 95.0점, 지분율 70%)와 B업체(평균점수 90.0점, 지분율 30%)가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경우

※ 계산예시)  $(95.0 \times 70\%) + (90.0 \times 30\%) = 93.5$

- 3) 11개 지방해양수산청에서 시행한 용역평가를 받은 실적이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용역수행평가지 1.6점을 부여한다.
- 4) 설계용역 평가 실적에 대한 관련기관(지방청 등) 조회 과정에서 허위 또는 누락사실이 발견되면 해당업체의 용역수행성과 점수는 최하점 (1.2점)으로 평가한다.

### 3. 신용도

가. 영업정지(업무정지), 벌점 등

- 1) 영업정지(참여업체)

용역사업자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제2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설계 등의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을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합니다.

## 2) 기술자격 및 업무정지(참여기술인)

참여기술인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제2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설계 등의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합니다.

## 3) 별점

용역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별점을 받은 경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합니다.

※ 점수계산은 참여용역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의 누계평균 별점에 따라 감점

## 나. 재정상태 건설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다음 각 목에 따라 적용합니다.

- 1)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첨부 1)할 수 있습니다.
-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 3)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 4)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합니다.

##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가. 기술개발 실적

- 1) 건설신기술·해양수산신기술 중 건설기술·특허·실용신안을 대상으로 인정하되, 건설신기술은 해양수산신기술 중 건설기술은 항만·해안분야(해당사업 해당공종) 설계 등의 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특허 및 실용신안은 항만·해안분야(해당사업 해당공종) 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대하여 인정합니다.
- 2)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 또는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17조에 따라 인증된 해양수산신기술 중 건설기술은 보호기간(유효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며,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은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출원일로부터의 경과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한 후 평가합니다.
- 3) 기술개발실적이 동일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해양수산신기술 중 건설기술,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합니다.
- 4) 기술개발실적은 2인 이상이 최초 출원 시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 해당 점수를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합니다.
- 5) 공동도급에 의한 경우에는 개발 실적 건수에 용역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나. 투자실적

- 1) 건설기술개발 투자실적(재무제표상의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등)은 최근 3년간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다만, 회사 설립연수 부족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치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연수를 기준으로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합니다.

※ (2개년 투자비율합계/2 또는 1개년 투자비율로 하며, 설립 연수가 3년 이상 된 업체가 3년간 자료를 미제출시는 제출자료 합계/3)

- 가) 최근 3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 (건설기술개발투자액/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계산합니다.
- 2)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출원인(법인대표자와 법인과의 관계는 동일하게 인정)과 등록인이 상이한 경우와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 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투자실적으로 인정하며,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3) R&D 참여 실적에 적용된 실적금액은 투자실적에 포함합니다.(단, 용역의 종류, 규모, 특성 등에 따라 투자실적에서 제외 가능)
- 가) R&D 사업 참여 실적은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62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연구수행(참여) 실적증명서(첨부 2)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단, 해당 연구개발사업(과제)의 중간 및 최종평가 시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6조에 따른 평가 결과가 극히 불량한 연구개발과제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나)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0조에 따른 “기획연구” 과제에 대한 참여 실적은 R&D 사업 참여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4) 해당 설계 등의 용역사업자인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개년 투자실적으로 합니다.
- 5) 본 과업에 공동도급으로 참여한 경우 각 비율에 구성원별 용역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합산합니다.

#### 다. 활용실적

- 1)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 「해양수산 과학기술 육성법」 제17조에 따라 인증된 해양수산신기술 중 건설기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실제 활용실적 건수와 금액에 따라 평가합니다.
- 2) 용역사업자가 건설신기술 또는 해양수산신기술 중 건설기술을 보호기간(유효기간) 내 공공공사(해당 용역 과업분야)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용역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단, 이 경우 입찰공고일은 보호기간 내에 있어야 함)

- 3)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및 실용신안은 최초 출원한 후 등록권리 만료기간 내에 공공공사(해당분야)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 용역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 현재 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단, 특허, 실용신안은 경과기간에 따라서 개발 실적에서 적용하는 가중치도 포함하여 계상)
- 4)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4조제6항에 의해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영 제117조제1항에 의해 지정·고시된 기관의 건설신기술 활용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며, 해양수산신기술 중 건설기술은 해양수산신기술 활용실적 확인서(양식 12의 다)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 5)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은 「발명진흥법」 제52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 5. 업무 중복도

가. 해당용역 평가대상자(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 기술인)가 현재 수행중인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건설사업관리용역(기술지원기술인 제외) 등 다른 설계 용역의 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 기술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경우 중복기간을 산정하여 평가합니다.

나. 분야별 책임기술인의 업무 중복도는 용역의 종류, 규모, 특성에 따라 가중치를 별도로 정하여 차별 평가합니다.

다. 본 과업과 중복되는 대상사업은 공고일 이후 잔여과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것에 한하여 적용하며, 업무중복도는 참여 중인 소 전문분야 (해당 전문 분야외의 타 전문분야에 참여하는 경우도 포함)에 대하여 적용한다. (단, 공고일 현재 3개월 이상 용역중지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중복기간에 미산입)

※ 용역기간에 비해 기술인의 투입량이 많지 않은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 등은 해당용역의 특성을 감안하여 중복도 평가에서 제외

라. 분야별 업무중복도 산정방식은 아래와 같이 적용합니다.

예시) 분야별 책임기술인 업무중복도 산정방식(분야별 각각 중복도 산정 후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구 분	중복도	적 용
항만·해안 40%	300%미만	$4 \times 40\% \times 100\%$
토질·지질 30%	350%미만	$4 \times 30\% \times 90\%$
구조분야 30%	300%미만	$4 \times 30\% \times 100\%$
계		3.88

※ 항만·해안 중복도 : 1.6, 토질·지질 중복도 : 1.08, 구조분야 : 1.2  
 계산예시) 분야별 업무중복도 = 1.6 + 1.08 + 1.2 = 3.88

마. 업무중복내용은 해당기술인(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책임기술인)이 참여중인 용역에 대하여 해당 자료를 빠짐없이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기관(발주청 및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 조회과정에서 누락사실이 발견되면 해당기술인의 업무 중복도 평가점수는 0점 처리합니다.(단, 누락된 용역의 과업기간을 합산 평가 하여 점수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만 해당기술인 중복도 점수를 0점 처리합니다.)

### Ⅲ. 사업수행능력 평가항목별 배치기준

평가항목	세부사항	평가방법	배점	점수계산방법														
<b>합 계</b>			<b>100</b>															
<b>가. 참여기술인</b>			<b>50</b>															
1) 책임기술인			15	* 경력/실적이 만점기준의 50%에 미달하는 경우는 0점 처리														
	등 급	절대평가	3	<table border="1"> <tr> <td>해당분야 특급기술인 이상</td> <td>고급기술인</td> <td colspan="3">중급기술인 이하</td> </tr> <tr> <td>3.0</td> <td>1.5</td> <td colspan="3">0.0</td> </tr> </table>	해당분야 특급기술인 이상	고급기술인	중급기술인 이하			3.0	1.5	0.0						
				해당분야 특급기술인 이상	고급기술인	중급기술인 이하												
3.0	1.5	0.0																
경 력	절대평가	4	<table border="1"> <tr> <td>15년 이상</td> <td>15년 미만 13년 이상</td> <td>13년 미만 11년 이상</td> <td>11년 미만 9년 이상</td> <td>9년 미만</td> </tr> <tr> <td>4.0</td> <td>3.6</td> <td>3.2</td> <td>2.8</td> <td>2.4</td> </tr> </table>	15년 이상	15년 미만 13년 이상	13년 미만 11년 이상	11년 미만 9년 이상	9년 미만	4.0	3.6	3.2	2.8	2.4					
			15년 이상	15년 미만 13년 이상	13년 미만 11년 이상	11년 미만 9년 이상	9년 미만											
4.0	3.6	3.2	2.8	2.4														
실 적	절대평가	8	<table border="1"> <tr> <td colspan="5">○ 기술인의 최근 10년간 해당분야에 대한 용역 수행실적</td> </tr> <tr> <td>10건 이상</td> <td>10건 미만 9건 이상</td> <td>9건 미만 8건 이상</td> <td>8건 미만 7건 이상</td> <td>7건 미만</td> </tr> <tr> <td>8.0</td> <td>7.2</td> <td>6.4</td> <td>5.6</td> <td>4.8</td> </tr> </table>	○ 기술인의 최근 10년간 해당분야에 대한 용역 수행실적					10건 이상	10건 미만 9건 이상	9건 미만 8건 이상	8건 미만 7건 이상	7건 미만	8.0	7.2	6.4	5.6	4.8
			○ 기술인의 최근 10년간 해당분야에 대한 용역 수행실적															
10건 이상	10건 미만 9건 이상	9건 미만 8건 이상	8건 미만 7건 이상	7건 미만														
8.0	7.2	6.4	5.6	4.8														
2) 분야별 책임기술인			19	* 경력/실적이 만점기준의 30%에 미달하는 경우는 0점 처리														
	등 급	절대평가	4	<table border="1"> <tr> <td>해당분야 고급기술인 이상</td> <td>중급기술인</td> <td colspan="3">중급기술인 미만</td> </tr> <tr> <td>4.0</td> <td>2.0</td> <td colspan="3">0.0</td> </tr> </table>	해당분야 고급기술인 이상	중급기술인	중급기술인 미만			4.0	2.0	0.0						
				해당분야 고급기술인 이상	중급기술인	중급기술인 미만												
4.0	2.0	0.0																
경 력	절대평가	7	<table border="1"> <tr> <td>10년 이상</td> <td>10년 미만 8년 이상</td> <td>8년 미만 6년 이상</td> <td>6년 미만 4년 이상</td> <td>4년 미만</td> </tr> <tr> <td>7.0</td> <td>6.3</td> <td>5.6</td> <td>4.9</td> <td>4.2</td> </tr> </table>	10년 이상	10년 미만 8년 이상	8년 미만 6년 이상	6년 미만 4년 이상	4년 미만	7.0	6.3	5.6	4.9	4.2					
			10년 이상	10년 미만 8년 이상	8년 미만 6년 이상	6년 미만 4년 이상	4년 미만											
7.0	6.3	5.6	4.9	4.2														
실 적	절대평가	8	<table border="1"> <tr> <td colspan="5">○ 기술인의 최근 10년간 해당분야에 대한 용역 수행실적</td> </tr> <tr> <td>10건 이상</td> <td>10건 미만 8건 이상</td> <td>8건 미만 6건 이상</td> <td>6건 미만 4건 이상</td> <td>4건 미만</td> </tr> <tr> <td>8.0</td> <td>7.2</td> <td>6.4</td> <td>5.6</td> <td>4.8</td> </tr> </table>	○ 기술인의 최근 10년간 해당분야에 대한 용역 수행실적					10건 이상	10건 미만 8건 이상	8건 미만 6건 이상	6건 미만 4건 이상	4건 미만	8.0	7.2	6.4	5.6	4.8
			○ 기술인의 최근 10년간 해당분야에 대한 용역 수행실적															
10건 이상	10건 미만 8건 이상	8건 미만 6건 이상	6건 미만 4건 이상	4건 미만														
8.0	7.2	6.4	5.6	4.8														
3) 분야별 참여기술인			14	* 분야별 참여기술인 각 1인을 대상으로 평가														
	등 급	절대평가	4	<table border="1"> <tr> <td>해당분야 중급기술인 이상</td> <td>초급기술인</td> </tr> <tr> <td>4.0</td> <td>2.0</td> </tr> </table>	해당분야 중급기술인 이상	초급기술인	4.0	2.0										
				해당분야 중급기술인 이상	초급기술인													
4.0	2.0																	
경 력	절대평가	5	<table border="1"> <tr> <td>5년 이상</td> <td>5년 미만 4년 이상</td> <td>4년 미만 3년 이상</td> <td>3년 미만 2년 이상</td> <td>2년 미만</td> </tr> <tr> <td>5.0</td> <td>4.5</td> <td>4.0</td> <td>3.5</td> <td>3.0</td> </tr> </table>	5년 이상	5년 미만 4년 이상	4년 미만 3년 이상	3년 미만 2년 이상	2년 미만	5.0	4.5	4.0	3.5	3.0					
			5년 이상	5년 미만 4년 이상	4년 미만 3년 이상	3년 미만 2년 이상	2년 미만											
5.0	4.5	4.0	3.5	3.0														
실 적	절대평가	5	<table border="1"> <tr> <td colspan="5">○ 기술인의 최근 10년간 해당분야에 대한 용역 수행실적</td> </tr> <tr> <td>5건 이상</td> <td>5건 미만 4건 이상</td> <td>4건 미만 3건 이상</td> <td>3건 미만 2건 이상</td> <td>2건 미만</td> </tr> <tr> <td>5.0</td> <td>4.5</td> <td>4.0</td> <td>3.5</td> <td>3.0</td> </tr> </table>	○ 기술인의 최근 10년간 해당분야에 대한 용역 수행실적					5건 이상	5건 미만 4건 이상	4건 미만 3건 이상	3건 미만 2건 이상	2건 미만	5.0	4.5	4.0	3.5	3.0
			○ 기술인의 최근 10년간 해당분야에 대한 용역 수행실적															
5건 이상	5건 미만 4건 이상	4건 미만 3건 이상	3건 미만 2건 이상	2건 미만														
5.0	4.5	4.0	3.5	3.0														

평가항목	세부사항	평가방법	배점	점수계산방법										
	4) 참여기술인의 교육훈련 및 전차용역 수행실적		2											
		교육훈련	절대평가	2	○ 참여기술인이 최근 3년간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정도에 따라 평가 · 2주 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 × 2.0점 · 1주 이상 2주 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 × 1.0점									
		전차용역 수행실적	절대평가	-	○ 해당사항 없음									
<b>나. 유사용역 수행실적</b>			<b>15</b>	○ 회사의 최근 5년간 해당 용역과 유사한 시설물에 대한 용역 수행실적에 따라 평가										
	실적건수	절대평가	7	<table border="1"> <tr> <td>7건 이상</td> <td>7건 미만 6건 이상</td> <td>6건 미만 5건 이상</td> <td>5건 미만 4건 이상</td> <td>4건 미만</td> </tr> <tr> <td>7.0</td> <td>6.3</td> <td>5.6</td> <td>4.9</td> <td>4.2</td> </tr> </table>	7건 이상	7건 미만 6건 이상	6건 미만 5건 이상	5건 미만 4건 이상	4건 미만	7.0	6.3	5.6	4.9	4.2
7건 이상	7건 미만 6건 이상	6건 미만 5건 이상	5건 미만 4건 이상	4건 미만										
7.0	6.3	5.6	4.9	4.2										
	실적금액	절대평가	6	<table border="1"> <tr> <td>70억 이상</td> <td>70억 미만 60억 이상</td> <td>60억 미만 50억 이상</td> <td>50억 미만 40억 이상</td> <td>40억 미만</td> </tr> <tr> <td>6.0</td> <td>5.4</td> <td>4.8</td> <td>4.2</td> <td>3.6</td> </tr> </table>	70억 이상	70억 미만 60억 이상	60억 미만 50억 이상	50억 미만 40억 이상	40억 미만	6.0	5.4	4.8	4.2	3.6
70억 이상	70억 미만 60억 이상	60억 미만 50억 이상	50억 미만 40억 이상	40억 미만										
6.0	5.4	4.8	4.2	3.6										
	전차용역 수행실적	절대평가	-	○ 해당사항 없음										
	용역수행 성과	절대평가	2	○ 업체가 해당 발주청에서 수행한 용역평가 결과에 따라 평가하며, 해당 발주청의 상위기관에서 수행한 용역평가 결과 활용 가능 * 「건설기술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용역특성을 반영하여 발주청에서 별도로 정한 평가의 결과 활용 가능 <table border="1"> <tr> <td>95점 이상</td> <td>95점 미만 90점 이상</td> <td>90점 미만 85점 이상</td> <td>85점 미만 80점 이상</td> <td>80점 미만</td> </tr> <tr> <td>2.0</td> <td>1.8</td> <td>1.6</td> <td>1.4</td> <td>1.2</td> </tr> </table>	95점 이상	95점 미만 90점 이상	90점 미만 85점 이상	85점 미만 80점 이상	80점 미만	2.0	1.8	1.6	1.4	1.2
95점 이상	95점 미만 90점 이상	90점 미만 85점 이상	85점 미만 80점 이상	80점 미만										
2.0	1.8	1.6	1.4	1.2										
<b>다. 신용도</b>			<b>10</b>											
	1) 영업정지(업무정지), 벌점 등		7											
	용역사업자	절대평가		용역사업자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설계 등의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참여기술인	절대평가		참여기술인이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설계 등의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벌점	절대평가		용역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이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인의 누계평균 벌점에 따라 감점										

평가항목	세부사항	평가방법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2) 재정상태 건설도	절대평가	3	<p>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준 평가</p> <p>·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 활용</p> <table border="1"> <tr> <td>회사채</td> <td>BBB- 이상</td> <td>BBB- 미만 B- 이상</td> <td>CCC+ 이하</td> <td>미제출</td> </tr> <tr> <td>기업어음</td> <td>A3- 이상</td> <td>A3- 미만 B- 이상</td> <td>C 이하</td> <td>미제출</td> </tr> <tr> <td>기업신용</td> <td>BBB- 이상</td> <td>BBB- 미만 B- 이상</td> <td>CCC+ 이하</td> <td>미제출</td> </tr> <tr> <td>점수</td> <td>3.0</td> <td>2.8</td> <td>2.1</td> <td>0</td> </tr> </table> <p>&lt;첨부 1 참조&gt;</p>	회사채	BBB- 이상	BBB- 미만 B- 이상	CCC+ 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3- 이상	A3- 미만 B- 이상	C 이하	미제출	기업신용	BBB- 이상	BBB- 미만 B- 이상	CCC+ 이하	미제출	점수	3.0	2.8	2.1	0
회사채	BBB- 이상	BBB- 미만 B- 이상	CCC+ 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3- 이상	A3- 미만 B- 이상	C 이하	미제출																				
기업신용	BBB- 이상	BBB- 미만 B- 이상	CCC+ 이하	미제출																				
점수	3.0	2.8	2.1	0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5																					
	1) 개발실적	절대평가	2	<p>1)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 및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17조에 따라 인증된 해양수산신기술 중 건설기술은 보호기간(유효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며,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은 특허등록 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 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출원일로부터의 경과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한 후 평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설신기술, 해양수산신기술 중 건설기술 : 2.0점/건</li> <li>-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1.0점/건</li> <li>-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5점/건</li> </ul> <p>※ 경과기간에 따라 가중치 부여</p> <table border="1"> <tr> <td>구 분</td> <td>5년 미만</td> <td>5년 이상 10년 미만</td> <td>10년 이상 20년 미만</td> </tr> <tr> <td>특 허</td> <td>100%</td> <td>80%</td> <td>60%</td> </tr> <tr> <td>실용신안</td> <td>100%</td> <td>80%</td> <td>-</td> </tr> </table> <p>2) 위 1)의 기술개발실적이 동일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해양수산신기술,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p> <p>3) 위 1)의 기술개발실적은 2인 이상이 최초 출원시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 해당점수를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p>	구 분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20년 미만	특 허	100%	80%	60%	실용신안	100%	80%	-								
구 분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20년 미만																					
특 허	100%	80%	60%																					
실용신안	100%	80%	-																					
	2) 투자실적	절대평가	10	<p>1) 최근 3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건설기술개발투자액/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계산</p> <table border="1"> <tr> <td>구분</td> <td>1.50% 이상</td> <td>1.50% 미만 1.25% 이상</td> <td>1.25% 미만 1.00% 이상</td> <td>1.00% 미만 0.75% 이상</td> <td>0.75% 미만 0.05% 이상</td> </tr> <tr> <td>점수</td> <td>10.0</td> <td>9.0</td> <td>8.0</td> <td>7.0</td> <td>6.0</td> </tr> </table>	구분	1.50% 이상	1.50% 미만 1.25% 이상	1.25% 미만 1.00% 이상	1.00% 미만 0.75% 이상	0.75% 미만 0.05% 이상	점수	10.0	9.0	8.0	7.0	6.0								
구분	1.50% 이상	1.50% 미만 1.25% 이상	1.25% 미만 1.00% 이상	1.00% 미만 0.75% 이상	0.75% 미만 0.05% 이상																			
점수	10.0	9.0	8.0	7.0	6.0																			

평가항목	세부사항		평가방법	배점	점수계산방법																							
		3) 활용실적	절대평가	3	<p>1)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17조에 따라 인증된 해양수산신기술 중 건설기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실제 활용실적 건수와 금액에 따라 평가</p> <p>2) 용역사업자가 건설신기술 또는 해양수산신기술을 보호기간(유효기간) 내 공공공사(해당 용역 과업분야)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용역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단, 이 경우 입찰공고일은 보호기간 내에 있어야 함)</p> <p>3)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및 실용신안은 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되어, 최초 출원인이 등록권리 만료기간 내에 해당분야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용역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단, 특허, 실용신안은 경과기간에 따라서 개발 실적에서 적용하는 가중치도 포함하여 계상)</p> <p>- 건설신기술, 해양수산신기술 중 건설기술 : 1.0점/건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0.6점/건 -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3점/건</p> <p>* 활용실적에 따라 가중치 부여(건설신기술, 해양수산신기술, 특허, 실용신안)</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rowspan="2">구분</th> <th colspan="5">가 중 치</th> </tr> <tr> <th>1.0</th> <th>0.9</th> <th>0.8</th> <th>0.7</th> <th>0.6</th> </tr> </thead> <tbody> <tr> <td>활용건수 (건)</td> <td>5 이상</td> <td>5 미만 4 이상</td> <td>4 미만 3 이상</td> <td>3 미만 2 이상</td> <td>2 미만 1 이상</td> </tr> <tr> <td>활용금액 (억원)</td> <td>20 이상</td> <td>20 미만 18 이상</td> <td>18 미만 16 이상</td> <td>16 미만 14 이상</td> <td>14 미만 12 이상</td> </tr> </tbody> </table> <p>* 활용실적에 따른 가중치는 활용건수, 활용금액 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면 인정</p>	구분	가 중 치					1.0	0.9	0.8	0.7	0.6	활용건수 (건)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1 이상	활용금액 (억원)	20 이상	20 미만 18 이상	18 미만 16 이상	16 미만 14 이상	14 미만 12 이상
구분	가 중 치																											
	1.0	0.9	0.8	0.7	0.6																							
활용건수 (건)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1 이상																							
활용금액 (억원)	20 이상	20 미만 18 이상	18 미만 16 이상	16 미만 14 이상	14 미만 12 이상																							
마. 업무 중복도				10	<p>○ 해당용역 평가대상자(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이 다른 설계 등 용역의 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 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경우 중복기간을 산정하여 평가(단, 공고일 현재 3개월 이상 용역중지 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중복기간에 미산입)</p> <p>○ 용역기간에 대한 중복비율(수행중인 다른 용역들의 중복기간합계/해당용역기간×100)에 따라 평가</p> <p>○ 공고일 기준 잔여과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용역을 기준으로, 중복되는 잔여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p> <p>○ 용역기간에 비해 기술인의 투입량이 많지 않은 사후환경영향 조사용역은 해당용역의 특성을 감안하여 중복도 평가에서 제외</p>																							
		1) 책임기술인	절대평가	3	<p>○ 참여기술인 중 책임기술인으로 등급·경력·실적 평가를 받은 기술인의 중복도로 평가</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구분</th> <th>300% 미만</th> <th>300~350%</th> <th>350~400%</th> <th>400~450%</th> <th>450% 이상</th> </tr> </thead> <tbody> <tr> <td>점수</td> <td>3.0</td> <td>2.7</td> <td>2.4</td> <td>2.1</td> <td>1.8</td> </tr> </tbody> </table>	구분	300% 미만	300~350%	350~400%	400~450%	450% 이상	점수	3.0	2.7	2.4	2.1	1.8											
구분	300% 미만	300~350%	350~400%	400~450%	450% 이상																							
점수	3.0	2.7	2.4	2.1	1.8																							

평가항목	세부사항	평가방법	배점	점수계산방법												
	2) 분야별 책임 기술인	절대평가	4	<p>○ 참여기술인 중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등급·경력·실적 평가를 받은 기술인의 중복도로 평가</p> <table border="1"> <tr> <td>구분</td> <td>300% 미만</td> <td>300~350%</td> <td>350~400%</td> <td>400~450%</td> <td>450% 이상</td> </tr> <tr> <td>점수</td> <td>4.0</td> <td>3.6</td> <td>3.2</td> <td>2.8</td> <td>2.4</td> </tr> </table> <p>* 용역의 특성 등에 따라 분야별 책임기술인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산정 * 업무 참여도를 고려하여 주공종 분야(항만·해안, 토질·지질, 구조분야)에 참여하는 기술인(분야별 1인)에 대해서만 평가</p>	구분	300% 미만	300~350%	350~400%	400~450%	450% 이상	점수	4.0	3.6	3.2	2.8	2.4
	구분	300% 미만	300~350%	350~400%	400~450%	450% 이상										
	점수	4.0	3.6	3.2	2.8	2.4										
3) 분야별 참여 기술인	절대평가	2	<p>○ 참여기술인 중 분야별 참여기술인으로 등급·경력·실적 평가를 받은 기술인의 중복도로 평가</p> <table border="1"> <tr> <td>구분</td> <td>300% 미만</td> <td>300~350%</td> <td>350~400%</td> <td>400~450%</td> <td>450% 이상</td> </tr> <tr> <td>점수</td> <td>2.0</td> <td>1.8</td> <td>1.6</td> <td>1.4</td> <td>1.2</td> </tr> </table> <p>* 용역의 특성 등에 따라 분야별 참여기술인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산정 * 업무 참여도를 고려하여 주공종 분야(항만·해안, 토질·지질, 구조분야)에 참여하는 기술인(분야별 1인)에 대해서만 평가</p>	구분	300% 미만	300~350%	350~400%	400~450%	450% 이상	점수	2.0	1.8	1.6	1.4	1.2	
구분	300% 미만	300~350%	350~400%	400~450%	450% 이상											
점수	2.0	1.8	1.6	1.4	1.2											
4) 실무 기술인	절대평가	1	<p>○ 용역에 참여하지만, 등급·실적·경력 평가를 받지 않는 실무기술인의 중복도로 평가</p> <table border="1"> <tr> <td>구분</td> <td>300% 미만</td> <td>300~350%</td> <td>350~400%</td> <td>400~450%</td> <td>450% 이상</td> </tr> <tr> <td>점수</td> <td>1.0</td> <td>0.9</td> <td>0.8</td> <td>0.7</td> <td>0.6</td> </tr> </table> <p>* 용역의 특성 등에 따라 실무기술인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산정 * 업무 참여도를 고려하여 주공종 분야(항만·해안, 토질·지질, 구조분야)에 참여하는 기술인(해당분야 실무기술인 전체)에 대해서만 평가</p>	구분	300% 미만	300~350%	350~400%	400~450%	450% 이상	점수	1.0	0.9	0.8	0.7	0.6	
구분	300% 미만	300~350%	350~400%	400~450%	450% 이상											
점수	1.0	0.9	0.8	0.7	0.6											

평가항목	세부사항	세부평가방법							
	가. 가점								
	<p>건설기술인 신규 고용</p> <p>젊은 기술인 참여</p>	<p>○ 건설기술인 신규고용률에 따라 가점 부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 이상 : 0.1점</li> <li>- 2% 이상 : 0.2점</li> <li>- 3% 이상 : 0.3점</li> </ul> <p>*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률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p> <p>* 신규 건설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p> <p>*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p> <p>○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p> <p>○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p> <p>○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상 건설기술용역업체에서 근무한 전체 경력이 5년 미만인 기술인이 해당 용역에 참여한 경우에는 전체 참여인원수에 대한 비율에 따라 가점 부여</p> <table border="1"> <tr> <td>해당 설계참여 인원비율 (해당 용역에 참여하는 근무경력 5년 미만 기술인/해당 용역 전체 참여인원수×100)</td> <td>5% 이상</td> <td>3% 이상</td> <td>1% 이상</td> </tr> <tr> <td>가점</td> <td>0.2점</td> <td>0.15점</td> <td>0.1점</td> </tr> </table>	해당 설계참여 인원비율 (해당 용역에 참여하는 근무경력 5년 미만 기술인/해당 용역 전체 참여인원수×100)	5% 이상	3% 이상	1% 이상	가점	0.2점	0.15점
해당 설계참여 인원비율 (해당 용역에 참여하는 근무경력 5년 미만 기술인/해당 용역 전체 참여인원수×100)	5% 이상	3% 이상	1% 이상						
가점	0.2점	0.15점	0.1점						

#### IV.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작성방법 및 서식

## 1.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지침

- 가. 본 용역은 기술용역 표준계약서와 용역도급자가 작성·제출한 과업 수행계획서에 의거 시행하므로 수록하는 내용은 붙임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양식에 의거 작성하지 아니함으로 인한 불이익은 제출한 용역사의 책임으로 간주합니다.(각 항목 작성기준 참고)
- 나. 공동도급사는 참여 지분율(PQ평가서 활용됨)을 기재하여야 하며, 대표 회사를 결정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 다. 각종 증빙서류는 제시된 양식의 뒷면에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며, 미 첨부된 자료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라. 목차는 반드시 평가항목의 순서로 작성해야 합니다.
- 마.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에 필요한 비용은 평가서 제출 용역업체의 부담이며, 우리 청에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바.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성실과 신의의 원칙 하에 작성되어야 하며, "본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허위기재 사항이 없어야 하며, 만약 허위 사실이 나타날 경우 본 용역 참여 자격을 상실하게 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붙임에 따라 작성하여 대표자 인감을 날인 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사.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기재 내용에 허위 또는 중대한 오류가 있는 것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상실될 수 있으므로 붙임 양식에 내용 기재 시 신중을 기하여야 합니다.

## 2. 평가자료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표지 【양식 1】
- 나. 서약서 【양식 2】
- 다. 과업수행조직 및 업무분담 계획표

[사업책임기술인 1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참여기술인 각1인(항만·해안, 토질·지질, 구조)]

- 라. 참여기술인의 등급 【양식 3】
- 마. 참여 책임기술인의 경력·실적 【양식 4】
- 바. 참여기술인의 교육훈련 이수실적 【양식 5】
- 사. 유사용역 수행실적(건수·금액) 【양식 6】
- 아. 입찰 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양식 7】
- 자. 부실벌점 【양식 8】
- 차. 재정상태 건실도 【양식 9】
- 카. 기술개발실적 【양식 10】
- 타. 투자실적 【양식 11】
- 파. 활용실적 【양식 12】
- 하. 업무중복도 【양식 13】
- 거. 가점 【양식 14】
- 너. 자기평가서 【양식 15】 -

3. 제출부수 : 2부(원본 1부, 부분 1부, 자기평가서 포함), 자기평가서 1부(별권)

4. 규 격 : A4(210mm×296mm)

5. 지 질 : 백상지(80g/m<sup>2</sup>)

6. 인쇄방법 : 공판인쇄 등

7. 제 본 : 양면 좌철(무사 무선철)

※ 평가항목마다 반드시 라벨을 부착하여 찾기에 용이하도록 할 것.

# I. PQ 평가 관련 양식

## 첨부 1. 신용평가등급의 기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AAA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A1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A20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첨부 2. 연구수행(참여) 실적증명서 양식

제2000 - ○○호

## 연구수행(참여)실적 증명서(안)

신 청 인	업체명 (상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전화				
	사업자번호		팩스				
	증명서용도		제출처				
연구수행 실적내용	사 업 명		과제유형				
	연구과제명		총연구기간				
	연 구 내 용 (요약)						
	기 업 부 담 금 내 역	구 분	참여 형태	연구수행(참여)기간	기업부담금(현금)	비고	
		1차연도					
		2차연도					
		3차연도					
4차연도							
5차연도							
합 계							
<p>상기와 같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참여)하였음을 증명합니다.</p> <p style="margin-left: 200px;">년 월 일</p> <p style="margin-left: 150px;">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 (인)</p>							

【양식 1】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 서식 (※ 평가항목마다 라벨 필히 부착)

원 (부)	본 (본)	3cm
3cm	3cm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40Point)

【평택·당진항 배수로 호안 보강공사 실시설계용역】

(16Point)

2026. .

(30Point)

## 용역회사명

작 성 자 : 직 \_\_\_\_\_ 성 명 : 0 0 0

전화번호 : 000)0000-0000(직통번호) 팩 스 : 000)0000-0000 E-mail : \_\_\_\_\_

주소 : \_\_\_\_\_

【양식 2】

# 서 약 서

용역명 : 평택·당진항 1종 항만배후단지 공공 화물차 주차장 조성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본 업체는 귀 청이 공고한 위 용역에 대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작성, 제출함에 있어 본 평가서의 모든 내용이 허위기재 사항 없이 사실에 입각하여 작성되었음을 확인하며, 만약 허위 사실이 나타날 경우 본 용역 참여 자격을 상실하게 되거나, 관계법령에 따른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함에 이의 없이 따를 것을 확약하며 본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

업체명 : ○ ○ 업체 (주)

대표자 : ○ ○ ○ (인)

※ 서약서는 본 평가서에 포함(표지 다음 페이지에 삽입)하여 제출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양식 3】 참여 건설기술인의 등급**

**가. 사업책임기술인**

성명		소속		직위	
생년월일	(만세)	최종학교 (졸업연도)		기술등급	
자격증 (취득일)				해당분야 실적건수	건
총경력		년월	해당분야 전체경력		년월

**나.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성명	생년월일 (만세)	자격증 (취득일)	기술 등급	최종학교 (졸업연도)	소속 (직위)	비고

**다. 분야별 참여기술인**

분야별	성명	생년월일 (만세)	자격증 (취득일)	기술 등급	최종학교 (졸업연도)	소속 (직위)	비고

※ 주의사항

1.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본 용역 과업수행에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적정인원 작성 (평가대상자 여부를 비고란에 표기)

**【양식 4】 참여 책임기술인의 경력·실적**

□ 참여분야 :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문분야(전공)						
○학 력						
기 간	학 교 명		학 위			
○자 격						
자 격	취 득 일		등 록 번 호			
○해당분야 경력						
근 무 기 간	근 무 처		담 당 업 무			
합계 년 월						
○해당분야 용역 참여실적(별지 작성 가능)						
용 역 명	용역기간	계약금액 (천원)	발주청	참여내용	참여당시 소속회사	참여기간
합 계 (각 페이지 하단에 소계 기입)						

※ 주의사항

1.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분야별 1인)에 한하여 작성하며, 실적은 해당분야의 용역에 한하여 작성
2. 공동 또는 하도급 실적일 경우 전체 또는 원도급 내용을 ( )내에 병기함
3. 자격증 사본 및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사본 첨부
4. 해당분야 경력의 근무기간 “합계”란은 휴직기간을 제외한 실제 근무기간을 정확히 기재

**【양식 5】 참여기술인의 교육훈련 이수실적**

가. 교육이수실적(최근3년간)

구 분		성 명	교육기간 년월일~년월일	교육과정명	기술사자격보유여부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 기술인	항만·해안				
	토질·지질				
	구조				
분야별 참여 기술인	항만·해안				
	토질·지질				
	구조				

※ 주의사항

1. 교육기관에서 발행한 교육 이수증 등 증빙서류 사본 첨부
2.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참여건설기술인이 건설기술과 관련하여 건설진흥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에 한함
3. 1주는 5일을 기준으로 하며, 소수점으로 계상되는 주는 절사(예 : 1.8주 → 1주)
4. 교육훈련 이수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해당없음”을 표기

**【양식 6】 유사용역 수행실적(건수·금액)**

가. 참여업체별 유사용역 수행실적 집계표

(금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공동수급 대표회사	공동수급 참여회사	합 계
회		사			
명					
금차용역 참여지분율(A)			%	%	100%
유사용역 수행실적 (B)	금액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설계보상 대상자(80%)			
		계			
	건수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설계보상 대상자(80%)			
		계			
유사용역 환산실적 (A×B)	금 액				
	건 수				

※ 주의사항

1.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수행실적은 실시설계에 포함
2.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나. 참여업체별 건별 내역

공동수급 대표회사 : ○○○○(회사명 기입)

(단위 : 백만원)

구분	용역 개요					실적금액 (A×B)	실적 건수 (1×B)	확인 page
	용역명 / 용역내용	발주청	용역기간	준공금액 (A)	지분율 (B)			
원 도 급			~					
			~					
	계							
하 도 급			~		1.0		X	
			~				X	
			~				X	
	계						X	
합 계								

공동수급 참여회사 : ○○○○(회사명 기입)

(단위 : 백만원)

구분	용역 개요					실적금액 (A×B)	실적 건수 (1×B)	확인 page
	용역명 / 용역내용	발주청	용역기간	준공금액 (A)	지분율 (B)			
원 도 급			~					
			~					
	계							
하 도 급			~		1.0		X	
			~				X	
			~				X	
	계						X	
합 계								

※ 주의사항

1.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 준공한 용역부터 연도순으로 용역수행실적 확인서 (관련수탁기관 발급) 또는 용역수행실적증명서(발주청 발행) 첨부
2. 공동수급으로 수행한 용역 건에 대해서는 공동수급계약서 사본 첨부
3. 증빙자료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당 페이지 기입(해당 페이지가 불분명한 경우 평가에서 제외될 수 있음)
4. 증빙자료의 불충분으로 실적을 파악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증빙서류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의 처리하며, 입찰자는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다. 해외설계 수행실적

해외설계 수행실적확인서

I. 일반적인 사항		발급번호	
1) 용역명	(국문) (영문)	2) 발주기관 (발주국)	
3) 발주관성격	정부( ), 공공기관( ), 민간( )	4) 계약주체	본사( ), 지사( ), 현지법인( ), 지분율( %)
5) 신청자 (대표)	5-1) 회사명 5-4) 영업소재지	5-2) 면허번호	5-3) 대표자 5-5) 전화번호
6) 계약 및 준공	6-1) 계약일자 6-4) 계약금액	6-2) 착공일자	6-3) 준공일자 6-5) 준공금액
7) 원·하도급여부	원도급( ), 하도급( )	※ 해당란에 ○ 표	
8) 공동도급여부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단독도급( )	※ 해당란에 ○ 표	
9) 실적의 종류	개념설계( ), 기본설계( ), 실시설계( ), 감리( ), 건설관리( ), 타당성조사( ), 기타( )		
II. 용역실적의 내용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 작성	
구분	계약자 (대표)	계약자	계약자
1) 회사명			
2) 대표	(인)	(인)	(인)
3) 준공금액	(지분 : %)	(지분 : %)	(지분 : %)
4) 전체용역규모 (본란에는 주요 물량을 기재하고, 필요시 세부 물량은 별지 제6호 서식을 활용)			
III. 붙임			
1) 기타 실적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p>위와같이 용역 준공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200 . . .</p> <p>해외건설협회장 귀하</p> <p style="text-align: right;">주소 : 회사명 : 대표 : (인)</p>			
확인자			
용도	P.Q, 입찰, 적격심사, 기타	위 내용을 증명함.	
용역명		해외건설협회장(인)	
발주처			

라. 참여건설기술인의 해외용역 참여실적

해외설계용역 참여기술인확인서

I. 일반적인 사항				발급번호	
1) 신청인	1-1) 회사명		1-2) 대표자		
	1-3) 영업소재지		1-4) 면허번호		
II. 해외설계용역					
1) 공사명	(국문) (영문)			2) 발주기관 (발주국)	
3) 계약 및 준공	3-1) 계약일자		3-2) 착공일자	3-3) 준공일자	
	3-4) 계약금액		3-5) 준공금액		
4) 공동도급여부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단독도급( ) ※ 해당란에 ○ 표				
III. 참여기술인 현황		* 참여기술인별로 구분 작성			
구분	성명	주민등록번호	자격종목	자격등록번호	참여기간
1) 책임기술인	○○○	000000-0000000	○○○○○기술사	○○○○○○○○○	개월
2) ○○분야 책임기술인	○○○				개월
3) ○○분야 책임기술인	○○○				개월
4) ○○분야 책임기술인	○○○				개월
5) ○○분야 책임기술인	○○○				개월
IV. 붙임					
1) 기타 실적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p>위와같이 해외설계용역 참여기술인이 있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200 . . .</p> <p><u>한국건설기술인협회장</u> 귀하</p> <p style="text-align: right;">주소 : 회사명 : 대표 : (인)</p>					
확인자					
용도	P.Q, 입찰, 적격심사, 기타			위 내용을 증명함.  한국건설기술인협회장(인)	
발주처					
공사명					

**【양식 7】 입찰 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가. 용역사업자**

참여업체명	종 류	처분일자	처분기간	처분기관명	발주청명	처분사유 요약
	입찰참가제한					
	업 무 정 지					
	합 계	( )회 ( )개월				
	입찰참가제한					
	업 무 정 지					
	합 계	( )회 ( )개월				

※ 주의사항

1. 관련 수탁기관이 발행한 입찰참가 제한 및 업무정지 현황 확인서(용역수행현황 확인서) 첨부
2. 입찰참가 제한 및 업무정지 내역은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관계법령 등에 의거 입찰참가 제한 처분 및 기술자격 정지,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기간을 기재하되 허위사실의 발견시 해당항목 평가를 0점으로 처리함
3. 처분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없음'이라고 기재  
(법원에서 효력정지 등 처분 계류중이거나 처분 취소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증빙자료 첨부)

**나. 참여건설기술인**

성 명	종 류	처분일자	처분기간	처분기관명	발주청명	처분사유 요약
	기술자격 정지					
	업 무 정 지					
	합 계	( )회 ( )개월				
	기술자격 정지					
	업 무 정 지					
	합 계	( )회 ( )개월				

※ 주의사항

1. 관련 수탁기관이 발행한 기술자격 정지 및 업무정지 현황 확인서(용역수행현황 확인서) 첨부
2. 기술자격 정지 및 업무정지 내역은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관계법령 등에 의거 기술자격 정지 처분 및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기간을 기재하되 허위사실의 발견시 해당항목 평가를 0점으로 처리함
3. 처분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없음'이라고 기재  
(법원에서 효력정지 등 처분 계류중이거나 처분 취소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증빙자료 첨부)

**【양식 8】 부실별점**

**가. 용역사업자**

참여업체명	처분일자	처분사유	처분기관명	발주청명	별점 점수	누계 평균 별점	비 고
계							

※ 주의사항

1. 관련 수탁기관이 발행한 용역수행현황 확인서 첨부
2. 부실별점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없음'이라고 기재

**나. 참여건설기술인**

참여기술인 (성 명)		처분 일자	처분 사유	처분 기관명	발주 기관명	별점 점수	누계 평균 별점	비 고
계								
사업책임기술인( )								
분야별 책임 기술인	항만·해안( )							
	토질·지질( )							
	구조( )							
참여 기술인	항만·해안( )							
	토질·지질( )							
	구조( )							

※ 주의사항

1. 관련 수탁기관이 발행한 용역수행현황 확인서 첨부
2. 부실별점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없음'이라고 기재

**【양식 9】 재정상태 건설도**

구 분	공동수급 대표	공동수급 참여	비 고
업체명			
설립연도			
참여지분율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합계			

**※ 주의사항**

1. 공동수급시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양식 10】 기술개발실적**

가. 참여업체별 개발실적 집계표

분야	업체명	지분율	건명(지정번호)	권리자	유효기간	경과기간	적용분야
신기술							
	소계						
특허							
	소계						
실용신안							
	소계						
합계							

나. 참여업체별 건별 내역

공동수급 대표회사 : ○○○○(회사명 기입)

분야	건명 (지정번호)	권리자	유효기간	경과기간	내용	비고
신기술						
특허						
실용신안						

주)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한 것에 한한다.

공동수급 참여회사 : ○○○○(회사명 기입)

분야	건명 (지정번호)	권리자	유효기간	경과기간	내용	비고
신기술						
특허						
실용신안						

주)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한 것에 한한다.

**【양식 11】 투자실적**

**가. 참여업체별 투자실적 집계표**

(단위 : 천원, %)

구 분		공동수급 대표	공동수급 참여	비 고
업 체 명				
참 여 지 분 율				
건설기술 개발투자액	1년 차			
	2년 차			
	3년 차			
	합 계			
건설 부문 총 매출액	1년 차			
	2년 차			
	3년 차			
	합 계			
평균 투자 비율				
투자 실적(%)				

주)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한 것에 한한다.

**나. 참여업체별 건별 내역**

공동수급 대표회사 : ○○○○(회사명 기입)

(단위 : 천원, %)

일련번호	년도	건설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내용	건설기술 개발투자액 (A)	건설부문 총매출액 (B)	투자비율 (A/B)	비 고
계		건	천원			

주)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한 것에 한한다.

공동수급 참여회사 : ○○○○(회사명 기입)

(단위 : 천원, %)

일련번호	년도	건설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내용	건설기술 개발투자액 (A)	건설부문 총매출액 (B)	투자비율 (A/B)	비 고
계		건	천원			

주)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한 것에 한한다.

**【양식 12】 활용실적**

**가. 참여업체별 활용실적 집계표**

분야	업체명	지분율	건명(지정번호)	권리자	유효기간	경과기간	적용분야
신기술							
	소계						
특허							
	소계						
실용신안							
	소계						
합계							

주)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한 것에 한한다.

**나. 참여업체별 건별 내역**

공동수급 대표회사 : ○○○○(회사명 기입)

(단위 : 천원)

분야	건명(지정번호)	내용	활용금액	권리자	유효기간	경과기간	비고
신기술							
특허							
실용신안							
계	건		천원				

주) 법 제14조에 의하여 지정된 건설신기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실용신안의 실제 시공실적 건수와 금액을 기재

공동수급 참여회사 : ○○○○(회사명 기입)

(단위 : 천원)

분야	건명(지정번호)	내용	활용금액	권리자	유효기간	경과기간	비고
신기술							
특허							
실용신안							
계	건		천원				

주) 법 제14조에 의하여 지정된 건설신기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실용신안의 실제 시공실적 건수와 금액을 기재



**【양식 13】 업무중복도**

현재 수행중인 용역사업에 대한 참여건설기술인 현황

구분	성명	용역개요	발주청	용역기간	참여기간	잔여기간	비고
총계							
사업책임 기술인		- 용역명 :					
		- 용역내용 :					
		- 계약금액(백만원) :					
		(이하 동일)					
소계							
분야별 책임 기술인	항만						
	· 해안						
	토질						
	· 지질						
구조							
소계							
분야별 참여 기술인	항만						
	· 해안						
	토질						
	· 지질						
구조							
소계							
분야별 실무 기술인	항만						
	· 해안						
	토질						
	· 지질						
구조							
소계							

**【양식 14】 가점**

**건설기술인 신규고용률 현황**

업 체 명	지분율 (A)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B)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C)	신규고용률 D=(B/C)×100	평가 점수 (E)	가점 (A×E)
		명	명	%		
합 계						

※ 주의사항

1. 건설기술인 신규고용률에 따라 가점 부여
  - 1% 이상 : 0.1점
  - 2% 이상 : 0.2점
  - 3% 이상 : 0.3점
2.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률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
3. 신규 건설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인 경력 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
4.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
5.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
6.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젊은 기술인 참여 현황**

업 체 명	경력 5년미만 건설기술인 참여 인원(A)	건설기술인 전체 참여 인원(B)	설계참여율 C=(A/B)×100	가점 (D)
	명	명	%	
합 계				

※ 주의사항

1. 젊은 기술인 참여에 따라 가점 부여
  - 5% 이상 : 0.2점 / 3% 이상 : 0.15점 / 1% 이상 : 0.1점
2.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경력증명서)로 평가
  - 해당 용역에 참여하는 건설기술인 중 건설기술용역업체에서 근무한 전체 경력이 5년 미만인 자

【양식 15】 전체 제본시 포함(원본 1부, 부분 1부) 및 별권 제출(1부)

## 자 기 평 가 서

□ 회사명 : ○○엔지니어링/○○엔지니어링/○○엔지니어링

- 참여기술인 : 사업책임 ○○○, 항만·해안 ○○○, 토질·지질 ○○○, 구조 ○○○

□ 참여회사 현황(비고에 대표사 표기)

회 사 명	대표자	지분율	사업자등록번호	비고
				대표사

□ 참여기술인 현황(가능한 한 장으로 작성)

구 분	회 사 명	성 명	생년월일 (1900.00.00.)	자격(등급)사항 (최상위 자격 기재)	비고
책임기술인					
분야 별 책임	항만·해안				
	구조				
	토질·지질				
분야 별 참여	항만·해안				
	구조				
	토질·지질				
실무 기술인	항만·해안	...			
	구조	...			
	토질·지질	...			

1. 항목별 평가점수

구 분		배 점	평가점수	산출근거		
총 계		100				
1. 참여 기술인	합 계		50			
	책임 기술인 (항만·해안)	계	15			
		등 급	3			
		경 력	4			
		실 적	8			
	분야별 책 임 기술인	계		19		
		항만· 해안 (40%)	소 계	7.6		
			등 급	1.6		
			경 력	2.8		
			실 적	3.2		
		토질· 지질 (30%)	소 계	5.7		
			등 급	1.2		
			경 력	2.1		
			실 적	2.4		
		구조 (30%)	소 계	5.7		
			등 급	1.2		
경 력			2.1			
실 적	2.4					

구		분	배 점	평가점수	산출근거		
1. 참여 기술인	분야 참여 기술인	계	14				
		항만· 해안 (40%)	소 계	5.6			
			등 급	1.6			
			경 력	2.0			
			실 적	2.0			
		토질· 지질 (30%)	소 계	4.2			
			등 급	1.2			
			경 력	1.5			
			실 적	1.5			
		구조 (30%)	소 계	4.2			
			등 급	1.2			
			경 력	1.5			
			실 적	1.5			
		교육훈련 실적			2		
		전차용역 수행실적			-		
2. 유사용역수행실적		계	15				
		건 수	7				
		금 액	6				
		전차용역 수행실적	-				
		용역수행 성과	2				
3. 신용도		계	10				
		영업정지(업무정지), 벌점 등		7			
		재정상태 건설도		3			

구	분	배 점	평가점수	산출근거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계	15		
	개발실적	2		
	투자실적	10		
	활용실적	3		
5. 업무중복도	계	10		
	책임기술인	3		
	분야별책임기술인	4		
	분야별참여기술인	2		
	실무기술인	1		
※ 가점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등			

\* 평가점수는 회사에서 자체 평가한 점수를 기재

\* 평가점수는 항만·해안 40%, 토질·지질 30%, 구조 30% 가중치 적용

※ 자기평가서 작성시 유의사항

- 자기평가는 발주청의 평가오류를 방지하고 평가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료이며, 평가시 자기평가서를 우선으로 하여 평가할 계획이므로 성실하고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함.
- 산출한 점수에 대한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시기 바람  
(예시: 경력의 경우, 총 경력만을 기재하지 마시고, 개별 경력에 환산계수를 반영한 단위 경력을 산출 기재하고, 단위경력을 합산한 경력을 기재)
- 산출근거를 상기 서식란에 전부 기재하기가 곤란한 경우 별첨자료 제출 가능  
(예시: 경력의 경우, 경력증명서상의 경력중 평가기준에 적합한 경력을 별도로 발취 정리하고 환산계수를 적용한 경력산출서를 별첨자료로 제출)